

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 관련)

1.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단위: 원)	비고
카드뮴 · 구리 · 납		44,200	항목당
비소		44,200	
수은		44,200	
6가크롬		44,200	
아연 · 니켈		44,200	항목당
불소		71,100	
유기인		35,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14,000	
시안		17,700	
페놀류		56,100	
유류	벤젠	40,600	4개의 검사항목 전부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검사항목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개별 검사항목당 26,900원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62,7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26,900	항목당
벤조(a)피렌		114,000	
다이옥신		2,568,500	

시료채취비	91,900/공	
-------	----------	--

※ 비고: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누출검사수수료

검사항목			단위	검사수수료 (단위: 원)
탱크부	간접방식	10만리터 이하	탱크1기	441,000
		10만리터 초과 30만리터 이하	〃	646,000
		30만리터 초과 100만리터 이하	〃	1,498,000
		100만리터 초과 160만리터 이하	〃	1,690,000
		160만리터 초과 320만리터 이하	〃	1,921,000
		320만리터 초과 480만리터 이하	〃	2,161,000
		480만 리터 초과	〃	2,386,000
	직접방식	비파괴검사	m당	9,200
배관부	간접방식	기본수수료	라인당	110,000
		체적수수료	m ³ 당	22,500

비 고

- 배관부의 누출검사수수료는 배관 1라인(시점 및 종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수수료와 체적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 같은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어 동시에 검사가 가능한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1개의 저장탱크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에 다음 각 목의 검사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 1개를 초과하는 탱크부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의 25퍼센트
 - 1개를 초과하는 배관부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의 30퍼센트
-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